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공청사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☎032-930-3198)와 행정과(☎032-930-359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0. 11. 11.

강 화 군 수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)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위치

-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80-7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길상 면사무소	공공청사	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80-7번지 일원	4,022	증)700	4,722	강화군고시 제2020-67호 (2020.04.09.)	-

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길상면사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적변경 기정: 4,022㎡ 변경: 4,722㎡ 증) 700㎡ 	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쉼터를 확보하여 주민 이용편의 제공

○ 건축물(공공청사) 범위 결정 조서

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)	비고
60% 이하	250% 이하	13m(4층) 이하	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높이제한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 가능